

# 화해권고결정

사            건            [redacted] 이혼 등 청구의 소

원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, 담당변호사 조효동,

[redacted]

피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## 결 정 사 항

1.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
2.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.

가.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자녀 [redacted] 명의로 되어 있는 [redacted]

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20,000,000원

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,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한다. 피고는 이후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(민사, 형사, 가사 등 모두 포함)을 제기하지 않는다.

나.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.

다.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.

3.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, 재산분할,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, 그에 관한 민사, 형사, 가사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(부제소 합의).

4. 피고는 원고에게 연락이나 만남을 시도하지 않으며 자녀인 [REDACTED]에 대하여도 그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강요하거나 직장에 찾아가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. 만약 피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3,000,000원을 지급한다.

5.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, 피고는 법무법인 태유 일산분사무소에 보관중인 피고의 [REDACTED] 특수폭행에 대한 합의서의 전달을 요청할 수 있고,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.

6.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
7.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